

26. 영국령버진아일랜드[British Virgin Islands]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(가입자) 3.25% (사용자) 3.25%	(가입자) 민간 4% / 공공 3.5% (사용자) 민간 4.5% / 공공 4%	근로부문에 따라 보험료 차등 도입 (민간 2.5 / 공공 1%↑)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연 \$40,716 / X	연 \$43,524 / X	\$2,808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500주	500주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 및 현행법** : 1979년(사회보장), 1980년(사회보장), 2016년(퇴직연령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**

3 적용대상

- **당연적용** : 근로자 및 자영자
- **임의적용** : 이전에 1년 이상 당연적용 대상이었던 자

4 재원조달

- **가입자** : 월 소득의 3.5%(공공부문) 또는 4%(민간부문), 임의가입은 7%
- **자영자** : 월 신고 소득의 8.5%
- **사용자** : 월 소득의 4%(공공부문) 또는 4.5%(민간부문)
- **정부** : 없음,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 - ※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기준은 없으며 상한소득은 2020년 1월 기준, 주 \$837, 월 \$3,267, 연 \$43,524(가입자, 자영자, 사용자 동일)
 - ※ 가입자, 자영자, 사용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, 출산 및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활용(공공부문의 경우 현금질병급여만 해당)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 : 500주 이상 보험료 납부한 65세 도달자
- 노령일시금 : 50주 이상 500주 미만 보험료 납부한 65세 도달자
- 해외지급 가능
- 근로 유지 가능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최소 2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퇴직연령 미만자 중에서 영구적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고 최근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던 자
 - 의학박사가 6개월마다 장애 정도 판정
 - 퇴직연령 도달 시 지급 중단되며 노령연금으로 대체
- 장애일시금 : 최소 50주 이상 250주(500주라고 되어있으나 오류인 것으로 추정) 미만 보험료를 납부한 퇴직연령 미만자 중에서 영구적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았으며, 최소 지난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던 자
-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, 또는 사망 당시 최소 2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4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거나 15세 미만의 자녀(학생인 경우 21세)를 양육하는 배우자(최소 3년 이상 사망자와 거주한 동거인 포함), 15세 미만(학생인 경우 21세)인 고아
 -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 시 중단
- 유족일시금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요건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사망 당시 최소 50주 이상 250주 미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4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거나 15세 미만의 자녀(학생인 경우 21세)를 양육하는 배우자(최소 3년 이상 사망자와 거주한 동거인 포함), 15세 미만(학생인 경우 21세)인 고아
- 장제비 : 최소 26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,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, 15세 미만(학생인 경우 21세) 자녀 사망 시 지급
- 해외지급 가능(장제비 포함 유족급여)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가입자 연간 평균 가입소득의 30%에,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를 초과하는 매50주마다 연간 평균 가입소득의 1% 가산 지급
 - 연간 평균 가입소득은 퇴직 전 보험료를 납부한 최종 15년 중 가장 소득이 높은 11년간의 (가입기간이 적다면 총 납부한 연) 가입소득 합계를 11로 나눈 것
 -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최대 연간소득은 \$43,524
 - 최저 노령연금액은 월 \$260
 - 최대 노령연금 연액(年額)은 연간 평균 가입소득의 60%
 -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수급 가능하며, 총 연금액은 노령연금 100%에 유족연금 50%를 가산한 금액이나 가입자의 연간 평균 가입소득 100%까지만 지급
- 노령일시금 : 50주를 초과하는 매50주마다 가입자의 주간 평균소득 6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가입자 연간 평균 가입소득의 30%에,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를 초과하는 매50주마다 연간 평균 가입가입소득의 1% 가산 지급
 - 연간 평균 가입소득은 퇴직 전 보험료를 납부한 최종 15년 중 가장 소득이 높은 11년 간의 (가입기간이 적다면 총 납부한 연) 가입소득 합계를 11로 나눈 것
 -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최대 연간소득은 \$43,524
 - 최저 장애연금액은 월 \$260
 - 최대 장애연금 연액(年額)은 연간 평균 가입소득의 60%
 - 장애일시금 : 50주를 초과하는 매 50주마다 가입자의 주간 평균소득 6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※ 노령, 장애연금은 소비자종합물가지수 또는 5% 중 더 낮은 수치에 따라 매년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의 66.7% 지급
 - 고아연금 : 배우자연금의 33.3%, 완전고아에게는 66.7% 지급
- 유족일시금
 - 배우자일시금 : 사망자가 수급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일시금액의 66.7% 지급
 - 고아일시금 : 배우자일시금의 33.3%, 완전고아에게는 66.7% 지급
- 장제비 :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에 따르며, 1세 미만은 \$450, 1~15세는 \$1,950, 16세 이상 사망 시는 \$3,000

○ **사회보장위원회(Social Security Board)**

-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 담당
- 건강사회개발부장관(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)이 지정한 삼자위원회의 관리를 받음(건강사회개발부 <http://www.bvi.gov.vg/content/ministry-health-and-social-development>)
- www.bvissb.vg

<2019년 ISSA 자료>